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716
------	------

2026.06.1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5월 27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6.6.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실장 이수연)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지원 및 서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0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을 개관하여 서울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발굴·보육·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창업센터 동작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대행기간이 '26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프라자
- 규 모: 전용면적 2,887.4㎡, 지상 1~7층
- 공간현황: 보육공간(30실), 세미나실,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등

나. 위탁개요

- 사 업 명: 서울창업센터 동작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3년(’ 27. 1. 1.~’ 29. 12. 31.)
-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 27년 소요예산(안): 1,107백만원(민간위탁금)

다. 위탁사무

-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세부 운영 방안 수립·시행
-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육성 및 지원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서울창업센터 동작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안전 점검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市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 22. 9. 스페이스살림 여성창업 지원 기능 이관(여성가족실→경제실)
- ' 22.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대행 협약 체결(市-SBA)
- ' 23. 11. 서울창업센터 동작 리모델링(' 23. 8.~10.) 및 재개관
- ' 24.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SBA 대행, 1년 단위 협약)
- ' 25. 4. 서울창업센터 동작 특화사업 강화 방안 수립

※ 특화 방향 : 중장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기술창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창업지원시설 간 운영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행정관리 체계 개선
 - ※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등 市 창업지원시설 10개 중 7개 민간위탁 추진
- 사업 운영 안정화에 따른 민간 창업 전문성 기반 운영방식으로 전환
- 민간의 경쟁원리 활용을 통해 성과 중심의 능률적 운영으로 전환
- 급변하는 창업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필요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25. 5. 7.) 심의 결과: 적정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대행기간 만료(2026.12.31.)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2027.1.1.~2029.12.31.)하여, 중장년 기술창업지원 및 서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됨.

나.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현황

- 서울시는 여성가족실에서 운영하던 스페이스살림의 기술창업 지원기능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기능을 경제실로 이관(2022.9)함.

< 서울창업센터 동작 추진경위 >

- ('22.09) 스페이스살림 여성창업지원 기능 및 이관 추진(여성가족실→경제실)
 - ※ 여성가족실 '22년도 신년업무보고 시장 요청(스페이스살림 기술창업 지원기능을 전문기관이 수행)
- ('22.10) 市-SBA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 ('23.11) 서울창업센터 동작 리모델링('23. 8~10월) 후 재개관
- ('24.12) 市-SBA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 ('25.04) 서울창업센터 동작 특화사업 강화 방안 방침 수립
 - ※ 특화 방향 : 중장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기술창업 발굴 및 육성 지원(창업정책과)
- ('25.12) 市-SBA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
- ('26.02) 2026년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계획 수립

- 경제실은 이관받은 기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경제진흥원과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운영 대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3회에 걸쳐 서울경제진흥원과 재협약하며 동 창업센터를 대행으로 운영하여 왔음.
- 현재 동 창업센터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예비·초기단계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판로개척 및 서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및 시설 현황 >

- 운영방법: 대행
- 대행기관: 서울경제진흥원
- 대행기간: 2026.1.1.~2026.12.31.(1년)
 - 운영인력: 3명(팀장 1명, 책임 1명, 선임 1명)
- 대행사무: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세무 운영 방안 수립 시행 등
- 위치: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프라자
- 규모: 전용면적 2,887.4㎡, 지상 1~7층
- 재산관리관: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공간구성: 보육공간(30개실), 교육세미나실,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등


구분	용도	내용
7층	사무공간	라운지, 회의실
2~6층	입주기업공간	입주공간(30개실), 운영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
1층	개방형공간	개방형 회의공간



<서울창업센터 동작 전경>



<개방형 공간>



<입주 공간>

◦ 그리고 동 창업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유망 스타트업 47개사를 선정하여 전문가 멘토링 48회, 세미나 25회 지원 등 입주 연차와 성장단계에 따른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우수 기술 보유 창업기업 18개 사에는 사업화 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업 발굴과 스케일업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음.

< 최근 3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 성과 총괄 >

구분	파트너 (개사)	지원기업 (개사)	매출액 (억원)	투자유치액 (억원)	신규고용 (명)	지식재산권	
						출원(건)	등록(건)
계	(15)17	(110)189	(152)594	(90)175	(130)221	107	54
2023	(5)5	(30)40	(-)30	(-)5	(-)10	6	1
2024	(5)7	(40)55	(75)393	(-)73	(60)142	44	39
2025	(5)5	(40)94	(77)171	(90)97	(70)69	57	14

※ 괄호 안은 연초 목표 수치
 ※ 2023년은 스페이스살림 내부 리모델링(7월~10월)으로 8개월간만 운영됨

- 또한 입주공간 총 30실 중 21실(70%)을 중장년이 대표인 기업 대상 입주 공간으로 의무 할당하고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181회, 교육 47회 등을 지원하면서 발굴한 96개 창업팀에 61억원 투자유치와 32개사의 서울 소재 신규 사업자 등록 등의 성과를 내었음.

< 최근 3년간 서울창업센터 동작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지원 실적 >

구분	창업팀 발굴	투자유치	PoC매칭	서울 소재 신규 사업자등록
계	96개	61억원	34건	32개사
2023	36개	12억원	2건	11개사
2024	30개	28억원	4건	12개사
2025	30개	21억원	28건	9개사

- 민간 전문 협력 AC 활용한 중장년 중심 팀빌딩 방식 액셀러레이팅 96개팀 선발
 - 예비창업·초기창업 구분하여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멘토링 181회, 교육 47회 진행
 - 우수 예비창업팀 서울 소재 32개사 사업자등록, 사업화지원금 34개사 지급

- 이에 더해 입주한 모든 기업에 기술 전시 및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서남권 창업기관 협의회 통합 데모데이 추진 등으로 판로 개척과 서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음.

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 서울창업센터 동작은 서울경제진흥원의 대행기간 동안 신속한 업무의 이관 및 기관 안정성 확보, 특화사업 추진 준비를 단계별로 진행하며 종합적인 창업지원센터로서 기능해 왔음.
- 다만 단기간 협약으로 운영되는 대행사업의 특성상 중장년 창업지원 시설 특화를 위한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렵다는 점과 사업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지속적인 운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책임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운영방식을 현재의 대행 방식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성과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는 동 기관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3년간(2027.1.1.~2029.12.31.) 11억 7백만원의 수탁 예산을 투입하여 중장년 기술창업 전주기 성장지원 및 재도전 기반 창업 환경의 조성 및 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임.

< 서울창업센터 동작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사무: 서울창업센터 동작 관리 및 운영(시설형) ○ 위탁기간: 2027.1.1.~2029.12.31.(3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공개모집 ○ 주요 위탁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세부 운영 방안 수립·시행 -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육성 및 지원 등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서울창업센터 동작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안전 점검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市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7년도 예산(안) 			
구분	계(천원)	산출내역	
계	1,106,931		
민간위탁금	인건비	279,690	- 정원 4명 ▸ 기본급, 제수당, 4대 보험 등
	운영비	565,741	시설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사업비	261,500	중장년 기술창업 발굴 및 육성 등

- 서울창업센터 동작은 중장년 기술창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울시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지원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시 사무에 해당함.

서울특별시 창업지원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은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 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또한 중장년 기술창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목적 사업에 해당하고 시민의 권리나 의무를 새롭게 발생·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간위탁 요건에 부합하므로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아울러 동 시설은 중장년층 창업지원 특화센터로서 유망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보육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유치 및 엑셀러레이팅 제공, 기업 네트워크 및 해외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민간위탁¹⁾ 요건에도 부합함.
- 한편 동 기관은 민간위탁으로의 전환 목적을 ‘전문성의 제고와 책임소재 명확화를 통한 성과중심 운영체계 구축’에 두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체계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입주기업 중 중장년층 기술창업 기업의 데스밸리(창업 3~5년차) 생존율 조사와 후속 관리, 공실 발생 최소화 방안 등 실질적 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체계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요건

① 시 소관사무 ② 공공성·공익성 ③ 능률성·전문성 / 지속성·포괄성 ④ 경쟁가능성 ⑤ 책임성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716
----------	------

제출년월일 : 2026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지원 및 서남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0월 「서울창업센터 동작」을 개관하여 서울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발굴·보육·투자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나. 서울창업센터 동작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대행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대행기간이 '26년 12월 31일자 만료 예정으로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다.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개요

- 위치: 동작구 노량진로 10, 서울가족프라자
- 규모: 전용면적 2,887.4㎡, 지상 1~7층
- 공간현황: 보육공간(30실), 세미나실, 회의실, 네트워킹 공간 등

나. 사업개요

- 사업명: 서울창업센터 동작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3년('27. 1. 1.~'29. 12. 31.)
- 위탁유형: 시설형 민간위탁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27년 소요예산(안): 1,107백만원(민간위탁금)

다. 위탁사무

- 서울창업센터 동작의 세부 운영 방안 수립·시행
- 중장년 중심 기술창업 육성 및 지원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서울창업센터 동작 시설물 유지관리, 개·보수 안전 점검
- 기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市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민간위탁(신규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 추진경위
 - '22. 9. 스페이스살림 여성창업 지원 기능 이관(여성가족실→경제실)
 - '22. 10.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대행 협약 체결(市-SBA)
 - '23. 11. 서울창업센터 동작 리모델링('23. 8.~10.) 및 재개관
 - '24.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SBA 대행, 1년 단위 협약)

- '25. 4. 서울창업센터 동작 특화사업 강화 방안 수립

※ 특화 방향 : 중장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기술창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민간위탁 신규위탁 추진 필요성

- 市 창업지원시설 간 운영체계의 일관성 확보 및 행정관리 체계 개선

※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등 市 창업지원시설 10개 중 7개 민간위탁 추진

- 사업 운영 안정화에 따른 민간 창업 전문성 기반 운영방식으로 전환

- 민간의 경쟁원리 활용을 통해 성과 중심의 능률적 운영으로 전환

- 급변하는 창업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필요

마.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26. 5. 7.) 심의 결과: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7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경제실 창업정책과 오선숙(☎ 2133-4876)
김가영(☎ 2133-4761)